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정부혁신·조직관리 전담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신설하는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며, 급증하는 특송 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4명(5급 1명, 6급 6명, 7급 34명, 8급 31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28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세관 1개 과, 제주세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되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탐지견 훈련교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신설한 기구(정보개발팀)의 존속기간을 2020년 2월 29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로 한다.

제12조에 제3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협업검사센터장은 제1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제6항 중 “1명(6급 1명)은 환경부”를 “2명(6급 2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총계 “349”를 “3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8”을 “349”로 하며,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4의2 총계 “355”를 “3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54”를 “355”로 하며,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7 총 계 및 일반직 계 “71”을 각각 “72”로 하고, 공업주사보 “2”를 “3”으로 한다.

별표 7의2 총 계 및 일반직 계 “71”을 각각 “72”로 하고, 공업주사보 “2”를 “3”으로 한다.

별표 8 총계 “4,637”을 “4,750”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4,580”을 각각 “4,69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19”를 “120”으로 하고, 관세주사 “755”를 “758”로 하며, 해양수산주사 “40”을 “41”로 하고, 식품위생주사 1 다음에 “환경주사·공업주사·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신설하며, 환경주사·공업주사·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1”를 신설하고, “환경주사 또는 공업주사 1”를 삭제하며, 관세주사보 “856”을 “879”로 하고, 공업주사보 “44”를 “48”로 하며, 해양수산주사보 “55”를 “61”로 하고, 관세서기 “990”을 “1018”로 한다.

별표 8 해양수산서기 “93”을 “96”으로 하고, 관세서기보 “702”를 “714”로 하며, 해양수산서기보 “74”를 “7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60”을 “167”로 하며,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22”를 “23”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96”을 “116”으로 한다.

별표 8의2 총계 “4,643”을 “4,756”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4,586”을 각각 “4,699”로 하며, 행정사무관 “138”을 “139”로 하고, 관세주사 “852”를 “855”로 하며, 해양수산주사 “44”를 “45”로 하고, 식품위생주사 1 다음에 “환경주사·공업주사·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신설하며, 환경주사·공업주사·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

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1”를 신설하고, “환경주사 또는 공업주사 1”를 삭제하며, 관세주사보 “862”를 “885”로 하고, 공업주사보 “44”를 “48”로 하며, 해양수산주사보 “55”를 “61”로 하고, 관세서기 “938”을 “966”으로 한다.

별표 8의2 해양수산서기 “90”을 “93”으로 하고, 관세서기보 “659”를 “671”로 하며, 해양수산서기보 “72”를 “74”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관독 담당) “160”을 “167”로 하며,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22”를 “23”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관독 담당) “96”을 “116”으로 한다.

별표 8의3 총계 및 일반직 계 “55”를 각각 “56”으로 하고, 4급 이하 “54”를 “55”로 한다.

별표 10 제1호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	5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2022년 9월 30일까지
----------------	---------------------------------------	----------------

별표 10 제1호2)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공항과 항만 통관감시(세관관서)	62명 (6급 6명, 7급 17명, 8급 14명, 9급 5명, 전문 경력관 나급 10명, 전문경 력관 다급 10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52명 (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3) 수입신고 사후심사(세관관서)	32명 (6급 4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8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4) 공항과 항만 통관감시(세관관서)	62명 (6급 3명, 7급 17명, 8급 19명, 9급 14명, 전문 경력관 나급 3명, 전문경 력관 다급 6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5)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7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6) 공항과 항만 통관감시(세관관서)	28명 (6급 1명, 7급 9명, 8급 8명, 9급 7명, 전문경 력관 다급 3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7)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0명 (7급 5명, 8급 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8)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30명 (7급 2명, 8급 4명, 9급 2 명, 전문경력관 나급 7명, 전문경력관 다급 1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제59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0년 2월 29일”을 “2022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세관) ① ~ ④ (생 략)	제11조(세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부산세관에 <u>세관운영과 · 감</u>	⑤----- <u>세관운영과 · 감사</u>
<u>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u>	<u>담당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u>
<u>터를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u>	<u>및 협업검사센터</u> -----
<u>과 · 수출과 · 수입과 · 자유무역</u>	-----
<u>협정과 · 부두통관1과 · 부두통</u>	-----
<u>관2과 · 휴대품과 및 휴대품검</u>	-----
<u>사관을, 신항통관국에 신항통관</u>	-----
<u>지원과 · 신항수입과 · 신항부두</u>	-----
<u>통관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u>	-----
<u>· 심사관 2명 · 심사정보과 · 체</u>	-----
<u>납관리과 · 분석실 및 분석관을,</u>	-----
<u>조사국에 조사총괄과 · 외환조</u>	-----
<u>사과 · 조사정보과 · 조사관 4명</u>	-----
<u>및 외환조사관을, 감시국에 감</u>	-----
<u>시총괄과 · 화물검사와 · 감시정</u>	-----
<u>보과 · 감시관 4명 및 감시장비</u>	-----
<u>과를 둔다.</u>	-----.
⑥ ~ ⑭ (생 략)	⑥ ~ ⑭ (현행과 같음)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
장) ① ~ (생 략)	장) ① ~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1>협업검사센터장은 제15조</u>
	<u>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u>
	<u>다.</u>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 제 ② ~ ⑤ (생 략) ⑥ 제4항 본문 및 별표 8에 따라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2 명(6급 2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 --.
기획재정부령 제59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9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협력국의 정보개발팀은 <u>2020년 2월 29일</u> 까지 존속한다. ② (생 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u>2022년 2월 28일</u> ----- -----.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49</u>	<u>350</u>	+1
·	·	·	
·	·	·	
일반직 계	<u>348</u>	<u>349</u>	+1
·	·	·	
·	·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u>12</u>	<u>13</u>	+1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55</u>	<u>356</u>	+1
·	·	·	
·	·	·	
일반직 계	<u>354</u>	<u>355</u>	+1
·	·	·	
·	·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u>12</u>	<u>13</u>	+1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1</u>	<u>72</u>	+1
일반직 계	<u>71</u>	<u>72</u>	+1
·	·	·	
·	·	·	
공업주사보	<u>2</u>	<u>3</u>	+1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1</u>	<u>72</u>	+1
일반직 계	<u>71</u>	<u>72</u>	+1
·	·	·	
·	·	·	
공업주사보	<u>2</u>	<u>3</u>	+1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637</u>	<u>4,750</u>	+113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4,580</u>	<u>4,693</u>	+113
일반직 계	<u>4,580</u>	<u>4,693</u>	+113
·	·	·	
·	·	·	
행정사무관	<u>119</u>	<u>120</u>	+1
·	·	·	
·	·	·	
관세주사	<u>755</u>	<u>758</u>	+3
·	·	·	
·	·	·	
해양수산주사	<u>40</u>	<u>41</u>	+1
·	·	·	
<u>환경주사 또는 공업주사</u>	<u>1</u>	<u><삭 제></u>	-1
<u>환경주사 · 공업주사 · 행정주사</u> <u>또는 시설주사</u>	<u><신 설></u>	<u>2</u>	+2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u> <u>주사 · 기상주사 · 환경주사 · 시</u> <u>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u> <u>전산주사</u>	<신 설>	<u>1</u>	+1
관세주사보	<u>856</u>	<u>879</u>	+23
·	·	·	
·	·	·	
공업주사보	<u>44</u>	<u>48</u>	+4
·	·	·	
해양수산주사보	<u>55</u>	<u>61</u>	+6
·	·	·	
·	·	·	
관세서기	<u>990</u>	<u>1018</u>	+28
·	·	·	
·	·	·	
해양수산서기	<u>93</u>	<u>96</u>	+3
·	·	·	
·	·	·	
관세서기보	<u>702</u>	<u>714</u>	+12
·	·	·	
·	·	·	

해양수산서기보	<u>74</u>	<u>76</u>	+2
·	·	·	
·	·	·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u>160</u>	<u>167</u>	+7
전문경력관 다군 (탐지조사 담당)	<u>22</u>	<u>23</u>	+1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u>96</u>	<u>116</u>	+20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643</u>	<u>4,756</u>	+113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4,586</u>	<u>4,699</u>	+113
일반직 계	<u>4,586</u>	<u>4,699</u>	+113
·	·	·	
·	·	·	
행정사무관	<u>138</u>	<u>139</u>	+1
·	·	·	
·	·	·	
관세주사	<u>852</u>	<u>855</u>	+3
·	·	·	
·	·	·	
해양수산주사	<u>44</u>	<u>45</u>	+1
·	·	·	
<u>환경주사 또는 공업주사</u>	<u>1</u>	<u><삭 제></u>	-1
<u>환경주사 · 공업주사 · 행정주사</u> <u>또는 시설주사</u>	<u><신 설></u>	<u>2</u>	+2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u> <u>주사 · 기상주사 · 환경주사 · 시</u> <u>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u> <u>전산주사</u>	<신 설>	<u>1</u>	+1
관세주사보	<u>862</u>	<u>885</u>	+23
·	·	·	
·	·	·	
공업주사보	<u>44</u>	<u>48</u>	+4
·	·	·	
해양수산주사보	<u>55</u>	<u>61</u>	+6
·	·	·	
·	·	·	
관세서기	<u>938</u>	<u>966</u>	+28
·	·	·	
·	·	·	
해양수산서기	<u>90</u>	<u>93</u>	+3
·	·	·	
·	·	·	
관세서기보	<u>659</u>	<u>671</u>	+12
·	·	·	
·	·	·	

해양수산서기보	<u>72</u>	<u>74</u>	+2
·	·	·	
·	·	·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u>160</u>	<u>167</u>	+7
전문경력관 다군 (탐지조사 담당)	<u>22</u>	<u>23</u>	+1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u>96</u>	<u>116</u>	+20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3]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7항 전단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55</u>	<u>56</u>	+1
일반직 계	<u>55</u>	<u>56</u>	+1
·	·	·	
4급 이하	<u>54</u>	<u>55</u>	+1